

장성군 『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지원사업』 수행기관 모집 공고

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 및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)에 의거 「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(방문 학습지 전문업체)를 공개 모집합니다.

2025. 1.

장성군가족센터장



1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

- 다문화가정의 경제적, 심리적 학습비 부담을 완화함
-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기초학습능력 신장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방지

○ 계약기간 : 2025. 3. 1. ~ 2025. 12. 31.(개인당 10개월)

○ 사업대상

- 5세~중등 3학년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
- 중도입국자녀(생활연령 제한 없음)

○ 사업내용

- 자율 선택과목 학습지 및 지원금 지원
- 방문교사 주 1회 방문, 15분 내외 수업 진행

○ 사업량 : 180명 내외(※수업료 단가 및 학습지 업체 부담액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)

○ 사업비 : 45,000천원(균비 100%)

2. 신청자격

-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도 능력을 갖추고, 현재 방문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
- 저소득, 한 부모 가족, 다자녀,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습비용은 1인 25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3. 지원규모 : 45,000천원(학습지 업체 부담 별도)

4.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- 공고기간 : 2025. 1. 22.(수) ~ 2025. 2. 4.(화) / 7일간
- 접수기간 : 2025. 2. 5.(수) ~ 2025. 2. 6.(목) / 2일간
- 공고방법 : 장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공고
 - ※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(5일 이상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10:00~18:00)
 - ※ 접수처 :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내 2층 (☎061-393-5420)
- 제출서류
 - 사업신청서 (서식1)
 - 사업제안서(공문 포함) (서식2)
 - 사업 수행지점 및 인력현황 (서식3)
 - 기관 소개서 (서식4)
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법인(단체, 회사)설립허가증 중 해당되는 자료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, 각 1부씩 제출한다.

5.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

- 심사기준 : 방문학습 운영(30점), 프로그램의 다양성(30점), 사업수행능력(40점)
 - ※ 장성군 전 11개 읍·면 방문교사 파견 가능 업체 우선 선정
- 선정방법
 - 심사위원의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
 - 심사방법 : 평가표 기준 평균 70점 이상 득점 기관 선정 (선정 기관 수 제한 없음)

6. 선정결과 발표

- 발표(예정)일 : 2025. 2. 7.(금)
- 발표방법 : 장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업체에 개별 통지
 - ※ 미 선정업체 통보는 생략

7. 기타사항

- 신청접수 현황, 심사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(단, 증빙사실 확인 등 필요시 증거요구 제출은 가능)
- 공고내용 미 숙지·미확인,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
- 접수된 서류 중 관계 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
-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.
- 사업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는 보조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

8. 문의 : 장성군가족센터 (☎061-393-5420 나수지)